

# 교양교육센터운영규정

제정 2020.02.17. 1차 전면개정 2021.02.22  
2차 전부개정 2022.05.0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 “이라 한다.) 교양교육센터(이하 “센터 “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①센터는 학생의 핵심역량 증진과 학생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과 외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 수립
2. 교양교육과정 개발과 편성,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
3.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업무
4. 핵심역량 증진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활동계획 수립 및 지원
5.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수학습 지원
6.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의 평가
7.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 운영 및 관리
8. 기타 교양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
9. 외국인 교원 업적 평가

②센터는 제1항의 직무 외에도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고 기초학습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
2.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운영 및 학사관리 업무
3.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평가
4.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
5.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

③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 외에도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외국어 경진대회 기획 및 운영
2. 특별 외국어 프로그램 (캠프, 해외어학연수 등) 개발 및 운영

**제3조(조직)** ①센터에는 센터장, 담당교수,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센터장은 제2조의 센터의 직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④담당교수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제2조 각항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대학 교원 또는 외래교수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센터의 행정을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팀의 구성, 직원배치,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센터의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교양교육과정 개발, 편성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⑤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국고, 교비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6조(회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7조(기타)**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자로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2021년 2월 22일로 전면 개정된 이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 「교양교육센터운영규정(2021.02.22.)」
2. 「어학교육센터운영규정(2015.02.01.)」